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
----------	-----

2019. 3. 8. (금)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9년 2월 26일

다. 회부일자: 201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2019년 3월 8일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 가. 제안이유

2018년 도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10.7%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보호 및 도박 예방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나.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설치(안 제5조)
- 학생 도박 실태조사(안 제6조)
-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안 제7조)
- 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안 제9조)
- 예산지원(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최근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등 스마트미디어의 학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도박 등 도박환경에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2018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2015년 대비 4.6% 증가한 10.7%(위험군 5.5%, 문제군 4.1%), 8,37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도박문제 최고수준인 문제군도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도 2015년 보다 16% 증가한 57.8%,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경주 류 등 법적으로 이용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한 청소년도 약 3배(1.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충북의 청소년 도박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 도내 학생들에게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에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여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각 급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5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한 것은 도박 예방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 매년 1회 이상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박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도박예방교육의 실제적 시행과 도박문제 위기학생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됨
-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을 담은 제9조는 도박 예방과 근절 노력을 일시적인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등 도박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예방교육”이란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12. 19.>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 학생도박 예방교육 위원회 설치에 따른 참석 수당 등 제반비용

## 3. 관련조문

- 제5조 학생도박 예방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용 산출을 미반영함
- 안 제5조 학생도박 예방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는 최대인원 10명을 전체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을 전제로 함
  - 회의 개최는 연간 2회 개최함을 전제로 참석수당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회의시간은 2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적용함
- 안 제6조 「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은 권고적 조항이어서 비용 산출을 미반영함
- 안 제7조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필요 시 예방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적 조항에 해당함

나.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 위원회 운영	13,500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가. 참석수당 150,000원×10명×2회=3,000,000	13,500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 산출근거

- 위원회 운영(연): 150천원(참석수당) × 10명 × 2회 = 3백만원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참석기본수당: 100천원, 2시간 초과수당: 50천원)
  - 지급대상: 외부위원 10명
  - 횟수: 2회(2019년 1회)
  - ※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추계함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보통교부금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세 출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참석수당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재원 조달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의존 재원	소 계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500	3,000	3,000	3,000	3,000	13,5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